

여수시 고시 제2025-139호

지방하천 점용 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하천 점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5일

여 수 시 장

□ 허가내용

1. 하천의 명칭	다음 허가내역 참조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허가내역

연번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주소	성명	위치	면적(m ²)		점용목적	점용기간	
1	2020-6	중흥천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지에스칼텍스(주)	여수시 중흥동 1691	33.3m ²		화학제품 이송용 배관 설치	당초	2020. 2. 14. ~ 2025. 2. 13.
									변경	2020. 2. 14. ~ 2030. 2. 13.
2	2007-23	울촌천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지에스칼텍스(주)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911, 857-1, 801-1, 801-2	당초	183.25m ²	LNG배관 매설	2007. 3. 27. ~ 2027. 12. 31.	
						변경	203.65m ²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3. 6.

여 수 시 장 (인)

1.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부여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061-659-3355 ~ 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3.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 1길 58-8 (봉계동)		20250305	건축물 멸실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합병	전라남도 여수시 안심 산길 61 (안산동)	전라남도 여수시 안심 산길 61 (안산동)	20250305	토지합병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합병	전라남도 여수시 안심 산길 65 (안산동)	전라남도 여수시 안심 산길 61 (안산동)	20250305	토지합병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 동 320-3, 330, 331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 1길 58-8 (봉계동)	20250306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주삼지구 새뜰마을사업 커뮤니티센터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 12길 67 (소호동)		20250306	건축물 멸실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40-14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삼거리길 5-14	20250306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186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평도길 26-2	20250306	건축물 신축	20080911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소미 1길 28-6 (문수동)		20250306	건축물 멸실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심장리 976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미포길 45-4	20250306	건축물 신축	20080911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여수시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명단 공고

건축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자문·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지역건축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여수시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공개모집 하여 선정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여 수 시 장

1. 공고내용 : 「여수시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선정 및 명단 공고
2. 공고기간 : 2025. 3. 5. ~ 3. 20. (15일간)
3. 구 성 : 11명
4. 위원임기 : 2025. 3. 5. ~ 2027. 3. 4. (2년)
5. 주요역할

가. 「건축법」, 「주택법」 규정에 따른 건축공사 현장점검 지원

나.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허가 대상 해체공사 현장점검 지원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기존 건축물 관리 및 안전점검 자문·지원

라. 건축물 사고 발생(예측) 시 긴급 점검

마. 건축안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등

6. 위원명단 : 붙임 참조

※ 기타 사항은 여수시 건축과 건축안전팀(☎061-659-32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여수시 건축안전자문단(제1기)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분야	비고
1	이준	건축사사무소 제이플러스 대표 (건축사)	건축계획	신규
2	배종수	한려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건축계획	신규
3	곽영경	(주)간토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건축계획	신규
4	고철주	건축사사무소 기람이엔지 대표 (건축사)	건축계획	신규
5	노성열	(주)캡스톤안전연구원 원장	건축시공	신규
6	임승규	남동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건축시공	신규
7	조철희	한국구조안전연구원 대표이사	건축구조	신규
8	차대한	링크구조기술사사무소 소장	건축구조	신규
9	김광열	(주)링크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건축구조	신규
10	유봉선	(주)오소프 대표이사	토목시공	신규
11	박대성	한국건설안전협회 지회 회장	건설안전	신규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6.

여 수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2021. 11. 2. ~ 2025. 12. 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여수상공회의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봉계동 811-5번지 일원	○ 면적 및 규모 - 면적: (기정) 1,105㎡ (변경) 1,108㎡ - 규모: L=80m, B=13m	여수시장/ 여수시 시청로 1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여수상공회의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여수시 도로과	2025. 3. 6. ~ 2025. 3. 20.(14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5. 3. 6. ~ 2025. 3. 20. (14일간) ※초일 미산입
-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4. 토지 및 지장물조서: 붙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과(☎061-659-4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조서(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내용	성명	주소	
합계				14,295	1,105						기정
합계				1,108	1,108						변경
	여천동	396-5	답	89	88	여수**회의소	전라남도 여수시 *수영로**(*무동)				기정
1	여천동	396-5	답	89	89						변경
	여천동	393	답	89	89	삼일중고 ***판매 주식회사	봉계동 ***	압류 소유권이전 청구권리가등기 가압류 가압류 압류 압류 압류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여수시 주식회사 **종합건설 주식회사 **리스금융 주식회사 **연금공단 (여수지사) **복지공단 여수지사 국-처분청 여수**서장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사업 공계조합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수시 시청로 1 광주 동구 *남로 5가 1-* 안양시 동안구 *양동 1422-1* 광주 동구 *남로 5가 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천동 7-1* 여수시 *수로 12* 여수시 *수영로 948-* 여수시 *무동 502-1* 서울영등포구 *의도동 15-2* 여수시 *양동 71*	기정
	여천동	393	답	89	89	삼일중고 ***판매 주식회사	봉계동 ***	압류 소유권이전 청구권리가등기 가압류 가압류 압류 압류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여수시 주식회사 한*종합건설 주식회사 광*리스금융 주식회사 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국-처분청 여수세무서장 ㈜고려상호신용 금고 ㈜주텍사업공계 조합 주식회사현대상 호신용금고	여수시 시청로 * 광주 동구 금남로 *가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 광주 동구 금남로 *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 여수시 *수로 *** 여수시 *수영로 ****-* 여수시 충무동 ****-*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 여수시 중앙동 ***	변경
	여천동	871-15	대	378	3	국	기획재정부				기정
3	여천동	871-17	대	5	5	여수시					변경
	여천동	871-16	도	5,905	66	국	건설부				기정
4	여천동	871-18	도	67	67	여수시					변경
	봉계동	811-5	도	6,001	67	국	건설부				기정
5	봉계동	811-14	도	68	68	여수시					변경
	봉계동	741-5	대	47	5	김*곤	전라남도 여수시 *곡길**-*(*원동)				기정
6	봉계동	741-11	대	4	4	여수시					변경
	봉계동	741-7	도	225	187	여수**회의소	전라남도 여수시 *수영로**(*무동)				기정
7	봉계동	741-12	도	190	190	여수시					변경
	봉계동	742-2	도	228	205	여수**회의소	전라남도 여수시 *수영로**(*무동)				기정
8	봉계동	742-3	도	196	196	여수시					변경
	봉계동	744-2	도	600	391	여수*회의소	전라남도 여수시 *수영로**(*무동)				기정
9	봉계동	744-4	도	396	396	여수시					변경
	봉계동	726-113	임	12	2	김*희	전라남도여수시**중앙로** ***동***호 (*천동,신영웅천지웰*차아파트)	지상권 근저당권	여수***협동조합 유과**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항단지로*** (*산동) 전라남도 곡성군 *과면 *학로 ***	기정
10	봉계동	726-178	임	2	2	김*희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중앙로 ** , ***동 ***호 (웅천동, 신영웅천지웰*차아파트)	가등기권자	박*진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로 **, ***동 ***호(웅천동, 포레나여수웅천*단지)	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내용	성명	주소	
	봉계동	726-76	전	717	1	김*희	전라남도여수시**중앙로** ***동***호 (*천동,신영웅천지웰*차아파트)	지상권 근저당권	여수***협동조합 육과**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항단지로*** (*산동) 전라남도 곡성군 *과면 *학로 ***	기정
11	봉계동	726-177	전	1	1	김*희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중앙로 ** ***동***호 (웅천동, 신영웅천지웰*차아파트)	가등기권자	박*진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로 **, ***동 ***호(웅천동, 포레나여수웅천*단지)	변경
	봉계동	726-116	임	4	1	김*희	전라남도여수시**중앙로** ***동***호 (*천동,신영웅천지웰*차아파트)	지상권 근저당권	여수***협동조합 육과**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항단지로*** (*산동) 전라남도 곡성군 *과면 *학로 ***	기정
12	봉계동	726-179	임	1	1	김*희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중앙로 ** ***동***호 (웅천동, 신영웅천지웰*차아파트)	가등기권자	박*진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로 **, ***동 ***호(웅천동, 포레나여수웅천*단지)	변경

「여수거북선축제 행사대행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여수거북선축제 행사대행용역」 제안서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 평가개요

- 사 업 명 : 여수거북선축제 행사대행용역
- 평가일시 : 2025. 3. 4.(화) 14:00 / 여수시 생활문화센터(프로그램실)
- 평가위원 명단(가나다순) : 7명
- 김효진, 박서경, 백영경, 윤태정, 임영찬, 정동규, 정형화

□ 평가결과 - 정성적 평가(70점)

평가위원명	평 점			
	1 업체	2 업체	3 업체	4 업체
평가위원 1	55	67	51	57
평가위원 2	57	61	65	59
평가위원 3	50	50	67	50
평가위원 4	59	61	64	64
평가위원 5	42	67	43	42
평가위원 6	62	65	58	61
평가위원 7	58	68	59	56

※ 평가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위원 명단순서(가나다순)와 평가결과 위원명 순서는 무관함.

※ 정성적 평가는 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됨(최고,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씩만 제외)

2025년 여수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여 수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량: 약 1,388대(차종 및 연식별 차등 지원됨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 1) 4등급 경유차 약 550대, 5등급 약 828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2) 굴착기·지게차 : 약 10대

나. 접수기간: 2025. 3. 4.(화) 09:00 ~ 3. 14.(금) 18:00

※ 선착순 접수 아니며 일괄 접수 마감 후 대상자 선정

다. 접수방법

*자세한 사항 18p참고

1) 인터넷 접수 (공휴일 접수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에서 신청 (<https://www.mecar.or.kr/>)

2) 등기우편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건만 유효하며, 3. 14.(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14055

3) 방문접수 (14시~16시)

※ ‘만65세 이상’만 가능

-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기후생태과 기후대기관리팀(1층)

라. 지원기준: 개인 1대, 법인 1대

※ 1인 1대로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 발생 시 다수 신청 차량 제작 일자순 선정

※ 대상선정 전 소유자 변경, 폐차 및 말소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 불가

마. 선정방법: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

- ①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 ②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 ③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5등급), 총중량 3.5톤 이상
- ④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바.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 대상차량

- ①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4등급 경유차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된 차량도 지원 가능
 - ※ 등급확인 : www.mecar.or.kr(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또는 콜센터 (1833-7435)
 -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중복 접수 시 무효 처리
- ②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건설기계
- ③ 굴착기·지게차(건설기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지원자격

- ①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사용본거지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차량인 경우 사업본거지가 여수시에 있어야 지원 가능
- ②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제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굴착기·지게차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③ (차량상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대상자 선정 후 성능검사업체에서 검사하여 제출
-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를 신청일 기준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소유한 자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지원 기준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 지원 제외 대상

-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사고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상태의 차량
-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경우
- 폐차하는 차량에 지방세·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차량 용도가 관용인 경우

2 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율

가. 조기폐차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5등급	4등급		
4·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10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800		7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2)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3) 지자체별 산정금액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차량기준가액 산정 의뢰

구 분	총중량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100%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2)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나. 지원금액: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 시 확인 가능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산정

다. 조기폐차 **기본보조금 지원** (폐차 시)

1) (저소득층) 기본보조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신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를 제출 (복지로 또는 지자체 발급)
-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가능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2) (소상공인) 기본보조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국번없이 ☎ 1357))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3)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라.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원(차량 구매 시)

구분		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승용 자동차 (5인승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 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배출가스 2등급 중고는 '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그 외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배출가스 2등급 중고는 '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차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 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2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최대적재량, 배기량, 규격)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2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구분		지원기준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 및 5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 가능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스 연료 포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추가지원 불가 대상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한 경우
 -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차량 조건 만족 시)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차량 조건 만족 시)
 - ☞ 굴착기·지게차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 ☞ 지게차 폐기→굴착기 구매/ 굴착기 폐기→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 **2024. 11. 1.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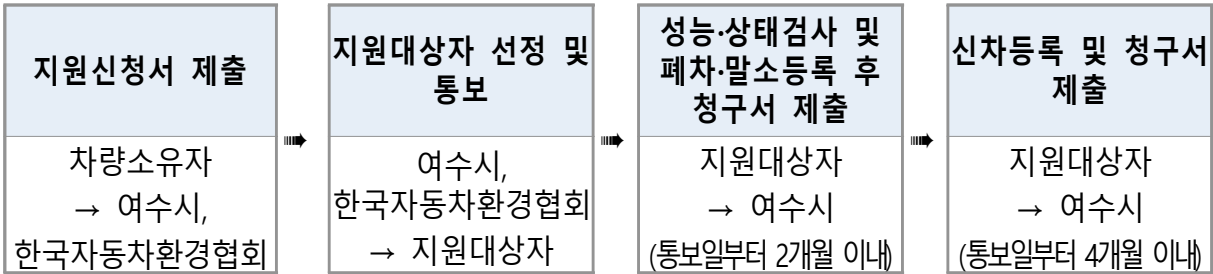
※ 신차구매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하여야함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대 지원**

3

지원절차 및 내용



※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인서 교부 전(선정일 전) 미리 폐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1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5. 3. 4.(화) ~ 3. 14.(금)

나. 접수방법: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및 방문(14~16시) 접수

※ 방문접수는 만65세 이상부터 가능

인터넷	<p>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8)</p> <p>“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p> <p>→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p> <p>→ 휴대폰 본인인증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p> <p>→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완료)</p> <p>▶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참고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롬(chrome) 권장 ○ 소상공인, 취약계층,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첨부 가능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될수 있음 ○ 생계형 차량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접수기간 내 신청자만 유효하며 이전 신청자는 취소 후 재신청 하여야 함
등기우편 및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② 방문신청: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여수시청 기후생태과 기후대기관리팀 ○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미제출시 신청·접수 불가 ④ (해당자) 저감장치불가확인서, 생계형차량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확인서 ⑤ (해당자)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작사 발급) ○ 우편접수인 경우 2024. 3. 14.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내 14시~16시 가능, 만 65세 이상

다. 제출서류 목록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서류	1.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3. ① 개인: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②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1부
추가 서류	1. [공동명의] - 위임장 1부, 공동명의자 신분증 각 1부 2. [지입차] - 위·수탁 계약서 1부 - 법인사업자등록증 1부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3. [추가지원 적용대상자] -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증빙서류) ※ [소기업(소상공인)]표기만 인정 ※ 신청일이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 (발급기준일: '25. 2. 28. 이후)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발급기준일: '25. 2. 28. 이후)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 첨부 - 보험사양(보험증권 등) ※ 신청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차량만 인정

②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서 교부

가. 선정방법: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

- ①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②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 ③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5등급), 총중량 3.5톤 이상
- ④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나. 대상자 선정 및 통보예정일: 2024년 4월 초 예정

※ (개인)신청자 명의 또는 (법인)대표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자고지(카카오톡 또는 문자) 예정

③ 성능·상태점검 및 폐차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가.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성능검사를 현장 검사 또는 온라인 검사로 실시하여 정상가동 판정 후 폐차하여야 함

- 1) 주요 부품에 정비요 또는 불량여부 체크되었을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차량이 정상 운행 가능하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있어야 함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대 지원
 (단,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초과 시 차주부담)

나. 건설기계는 공업사 또는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검사 실시

다. 현장 검사: 관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성능상태 기록부 발행)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유)그린웨이자동차공업사	여수시 봉계4길 7(봉계동)	682-8113
(주)한국지엠여수서비스센터	여수시 주삼덕양로 199(주삼동)	685-8155
남여수기아서비스	여수시 소라면 소호관기로 143	692-8285

라. 온라인 검사

- 1) 대상: 4·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펌프, 믹서트럭), 지게차, 굴착기
- 2) 온라인 검사수수료: 14,000원(부가세 포함)
- 3) 차주가 차량가동 동영상을 협회시스템에 등록하면 판독 후 협회에서 승인 및 차량상태 확인서 발급(특이사항 있을 시 현장확인)
 - ※ 온라인 검사 매뉴얼 별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60일 이내 찍은 동영상만 인정**
 - ※ 온라인 검사 문의사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031-689-3073

4] 폐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가.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청구서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자동 취소됨
- ※ **수출, 멸실, 차량초과, 환가기치, 차량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일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 제외**

나. 관내 폐차장 현황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동국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여수시 좌수영로 584(둔덕동)	654-3651
합동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여수시 만성로 228(만흥동)	662-7200
대성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여수시 상암로 275(호명동)	682-3366
호남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여수시 소라면 화양로 1762-10	692-3115

※ 타 지역 폐차장에서도 폐차 가능

다.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구비서류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여수시청 발급) 1부
-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원본)
- 3) 자동차 및 건설기계 말소등록사실증명서 1부 (사본)
- 4)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5)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및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 확인)서(원본), 성능검사 수수료 증빙서류(원본)**
- 6) (해당자)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
 - * 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 7)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 8) (지입차량인 경우) 위·수탁계약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신분증(개인)

5 신차(중고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가.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청구서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자동 취소됨

나. 2024년 1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 가능(지급대상 확인 필요)하며, 폐차하는 차량과 신차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다.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추가 중복 지급 불가(동일차량 1회만 지원)

※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및 「특정경유 자동차 등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되거나 교통사고 및 도난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적용

라.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구비서류

- 1)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원본)
- 2)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 3) 신차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 4)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 5) (지입차량인 경우) 위·수탁계약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신분증(개인)

6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 신차구매 추가지원 청구서 제출 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

나.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반복할 수 없음

※ 폐차하는 차량에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되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및 여수시 유권해석에 따름

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

다.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말소, 타시도 진출 및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또한,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

- 라. 상속이전 시에는 여수시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예외 적용 가능
- 마.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폐차 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
- 바. 본 사업은 사업추진 여부, 지원금액 등이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대상자 선정 후 통보 시 알 수 있음
- 아. 추가 문의사항: (사)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문의

※ 접수일 초반에는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내용 숙지 후 신청바랍니다.

-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차량상태 확인서(공업사 발급) 1부.
 5. [참고1] 인터넷 접수 방법 1부.
 6. [참고2] 차량 등급 조회 확인 방법 1부.
 7. [참고3] 자주하는 질문(참고용) 1부.

※ 참고사항

1.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후→성능검사를 받고→폐차(자진말소)해야 함
2. 성능검사를 받지 않고 폐차 또는 자진폐차 외 말소(차령초과, 수출말소 등)시 보조금 지급 불가
4. 신차구매 의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
 - (총중량 3.5톤 미만) 폐차되는 차량이 5등급일 경우 중고차 구매시 신차 보조금 지급 불가
 - (총중량 3.5톤 미만) 폐차되는 차량이 4등급일 경우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신차 및 중고차 (배출가스 1, 2등급) 구매
- ※ **배출가스 2등급 중고차는 2013. 1. 1. 이후 제작된 차량만 인정**
 - (총중량 3.5톤 이상) 폐차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으로 중고차신차 구매 시 지원(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
- ※ 추가 지원금은 '24.11.1.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에 대해 지원 가능
- ※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2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도로용 건설기계를 중고로 구매할 시 **제작년월이 '17.10.1** 이후 차량을 구매해야 추가보조금(100%) 지급 가능
5. 폐차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20%범위 일부 증가) 인정
6. **조기폐차 신청 전 대체차량(신차, 중고차)을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구매(추가) 보조금 지급 가능
7. 소유자 및 대상자동차 정보는 자동차등록증을 참고하여 정확히 기재
8. 우선순위 및 추가보조금 지급 대상자 증빙서류

가.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 **[소기업(소상공인)] 표기만 인정**
 나.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

※ 차량 구매 지원금 지급 불가 사례

폐차 대상 차량	신규 구매 차량	지원여부
3.5톤 미만차량	3.5톤 이상(화물,건설)차량 구매시	X
3.5톤 이상(화물,건설)차량	3.5톤 미만차량 구매시	X
3.5톤 이상(화물)차량	폐차 차량의 배기량 또는 적재중량 초과시 (20% 범위 이내 일부 증가 인정)	X

[참고2]

인터넷 접수 방법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
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순서2) 회원가입 후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저공해신청 클릭

민원서비스 배출가스등급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배출가스업무 정보마당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자동차배출가스365
 챗봇 서비스

저공해조치 신청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 이용약관 동의

저공해조치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동의해주세요.

이용약관(필수사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이하 "당 사이트"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원과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③ 당 사이트의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실제 지원 및 조치 가능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입력

- ※신청차량 및 매개발장치 간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 신청이 불가하며, 초기배차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실제 지원 및 조치 가능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지역번호 + 120)
- ※저공해조치 신청 전, 지자체 공고문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증빙서류는 지자체 공고문에 따라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항목은 입력 필수 사항입니다.

신청자명

*휴대전화(대표자) 010

*자동차 등록번호 **차량조회**

※ 차량조회버튼 클릭후 차량검색 차대번호링크를 선택하시면 신청정보가 자동입력됩니다.

차대번호

*저공해조치 방법 저감장치 부착 초기배차

취약계층 여부 선택된 파일 없음
 소상공인 여부 선택된 파일 없음

취약계층 ● /소상공인 ●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체크한 경우 초기배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파일로 제출 하여야합니다. 미제출 시 취약계층, 소상공인 적용 불가 (문의처 : 1577-7121)

※ 첨부서류는 하나의 압축파일(*.zip) 또는 PDF(*.pdf), 이미지(*.jpg, *.jpeg, *.png) 파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차명

연식

소유자명

주소

신청지자체

전화번호 [선택]

팩스번호 [선택]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였으며, 위와같이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사항) 본인은 신청차량의 정보(배출가스 등급 및 저감장치 부착 여부 등)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차량 정보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환경부 고시 제2020-50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초기배차 접수 후 절차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개인	법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차량번호 조회 닫기</p> <hr/> <p>1. 차량 등록번호로 검색하세요. 예) 경기 12가 1234</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구분선택</p> <input type="radio"/> 승용차 <input checked="" type="radio"/> 건설기계</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개인</p> <input type="text" value="차량번호입력"/></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검색</p></div> </div> </div> <p>2. 검색결과에서 찾으시는 차대번호 링크 선택 하시면 자동 입력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 font-size: small;">본인소유의 차량만 조회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명의자가 신청 가능합니다.)</p>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제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 법인 사업자 번호 및 대표자 주민번호(7자리) 필수 입력

※ 파일 첨부 가능

①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 조기폐차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공동명의의 경우 모두 해당되어야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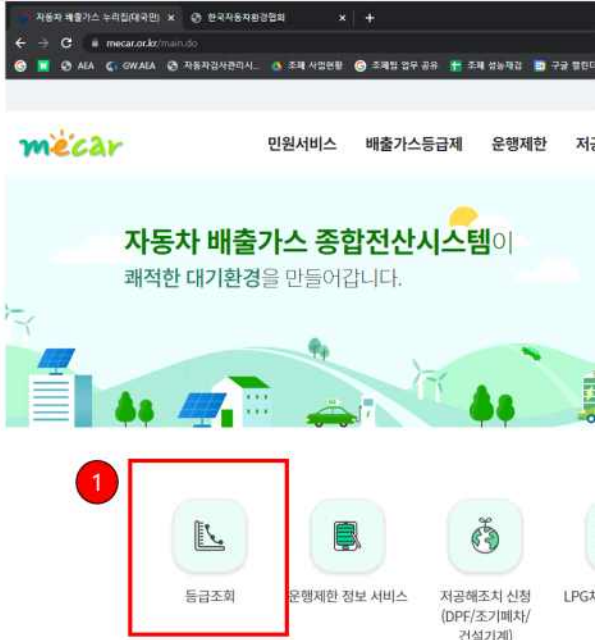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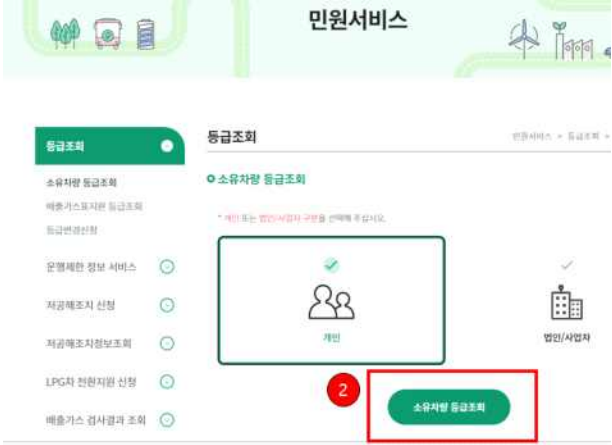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 ※ 공동명의이면서 소상공인일 경우 **각각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 첨부해야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③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도로용3종 건설기계 해당)

- 2006년식 이후 건설기계는 유로3 or 유로4 확인서류를 제작사에서 발급 가능

차량 등급 조회

순번	구분	MECAR 화면
1	<p>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www.mecar.or.kr</p> <p>(☎1833-7435)</p> <p>❶ 등급조회 클릭</p>	 <p>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한국자동차환경협회</p> <p>mecar.or.kr/main.do</p> <p>민원서비스 배출가스등급제 운행제한 저공해차</p> <p>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어갑니다.</p> <p>1 [등급조회] [운행제한 정보 서비스] [저공해차 신청 (DPF/조기매사/건설기계)] [LPG]</p>
2	<p>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p> <p>❷ 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p>	 <p>민원서비스</p> <p>등급조회</p> <p>소유차량 등급조회</p> <p>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p> <p>등급변경신청</p> <p>운행제한 정보 서비스</p> <p>저공해차 신청</p> <p>저공해차정보조회</p> <p>LPG차 전환지원 신청</p> <p>배출가스 검사결과 조회</p> <p>2 [개인/법인/사업자 선택] [소유차량 등급조회]</p>
3	<p>❸ 차량번호 입력</p>	 <p>등급조회</p> <p>소유차량 등급조회</p> <p>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p> <p>등급변경신청</p> <p>운행제한 정보 서비스</p> <p>저공해차 신청</p> <p>저공해차정보조회</p> <p>LPG차 전환지원 신청</p> <p>3 [차량번호 입력] [찾기]</p> <p>* 앞자리가 (앞)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십시오.(00070000)</p> <p>* 개인차량의 경우 다음단계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차량소유를 확인합니다.</p> <p>-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 회원가입 후 로그인 후 조회시 차량상세정보가 제공됩니다.</p> <p>- 차량소유주가 공동명의로 된 경우 대표명의로 차량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p> <p>- 대표명의로가 아닌 경우 확인시 전화연락 확인바랍니다.</p>

<p>4</p>	<p>④ 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p> <p>⑤ 휴대폰 인증</p>	
<p>5</p>	<p>⑥ 등급 조회</p> <p>※ 4, 5등급 조회</p>	

[참고3]

온라인 성능검사 방법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시 전액 환급

유튜브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신청 절차" 검색 → 동영상으로 쉽게 절차 확인 가능
 ※ 링크 : <https://youtu.be/zKskqWmQYOU>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이용 절차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p>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p>※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p>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p>2 단계 (차주)</p> <p>온라인 로그인</p>	 <p>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p> <p>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신청 및 진행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신청 및 결과확인</p>	<p>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p>						
<p>3 단계 (차주)</p> <p>정보 확인</p>	 <p>대상차량 확인</p> <p>◎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님의 보조금 신청 차량 목록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등록 번호 AA가1234 ·차대번호 KPACA4AB1BP000000 ·차명 액티언스포츠 ·연식 2011 ·폐차장 미지정 ·보조금 산정일 2024-01-15 ·입금 여부 미입금 ·사진 등록 일자 ·임시 저장 일자 ·검사 완료 일자 <p>진행상태 : 동영상등록 필요</p> <p>동영상등록</p>	<p>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p> <p>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p> <p>◎ 차량 정보</p> <table border="1" data-bbox="868 1178 1382 1413"> <tr><td>차대번호</td><td>KPACA4AB1BP000000</td></tr> <tr><td>차명</td><td>액티언스포츠</td></tr> <tr><td>차량 번호</td><td>AA가1234</td></tr> </table>	차대번호	KPACA4AB1BP000000	차명	액티언스포츠	차량 번호	AA가1234
차대번호	KPACA4AB1BP000000							
차명	액티언스포츠							
차량 번호	AA가1234							
<p>4 단계 (차주)</p> <p>동영상 업로드</p>	 <p>◎ 차량 동영상</p> <p>파일을 선택해주세요.</p> <p>업로드</p> <p>가능한 확장자명 : mp4, mkv, avi, mov, flv</p> <p>최종 제출</p> <p>임시 저장</p>	<p>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p> <p>※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p> <div data-bbox="852 1644 1410 1939"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www.escar.or.kr 내용:</p> <p>AA가1234차량 동영상이 최종 제출되었습니다. 대상차량확인 결과는 관리자 검토 후 안내 예정입니다.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예정)</p> <p>▶결과는 수수료 납부완료 차량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p> <p>▶수수료 납부는 나이스페이먼트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확인</p> </div> <div data-bbox="852 1951 1410 2029"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p> <p>※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p> </div>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p style="text-align: center;">5</p> <p style="text-align: center;">단계 (협회)</p> <p style="text-align: center;">합격 여부 판정</p>	<p style="text-align: center;"><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1661-0808)</p> <p>[Web발신] AA가1234 고객님, 안녕하세요?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에서 결제하실 내역 안내드립니다. 아래 URL로 접속하시면 상세 내역 확인과 결제진행이 가능합니다.</p> <p>* 귀하께서 신청하신 조기배차 차량의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납부(가상계좌) 안내입니다.</p> <p>* 대상차량확인 결과는 수수료 납부 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p> <p>▶ 아래 URL로 접속하시면 가상계좌 확인과 결제진행이 가능합니다.</p> <p>▶ URL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바랍니다.</p> <p>https://web.nicepay.co.kr/smart/slo.jsp?rid=WhIX2412197149</p> <p>가맹점 상호: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상품명: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금액: 14,000원 가맹점 대표전화: 031-689-3073</p> <p>** 상기 메시지는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요청에 따라 나이스페이먼트(주)에서 대행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수신내용에 대한 문의는 가맹점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수신자가 본인이 아니신 경우 삭제 부탁 드리며, 오발송으로 인해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p>	<p>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p> <p>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p> <p>1. 합격 :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p> <p>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검사 불합격 시></p> 
<p style="text-align: center;">6</p> <p style="text-align: center;">단계 (차주)</p> <p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 결제</p>		<p>① 안내 문자 메시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p> <p>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p> 

자주 하는 질문(참고용)

◎ (질문) 4등급, 5등급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 후 확인 또는 국번 없이 114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는 제작사에서 발급하는 등급 인증서류를 요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신청시 제출 필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경우 핸드폰 본인 인증이 필요

◎ (질문) 조기폐차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엔진('04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받은)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사업 대상입니다.

◎ (질문)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①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②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검사기간 경과 시 불가),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상 정상가동 판정,
④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가 기본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 (질문) 상품용 및 관용차량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상품용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이며, 관용차량은 민간보조 사업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질문) 사망한 차주도 가족이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사망한 차주는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이전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질문)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 나오나요?

- (답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상한액 300만원), 4등급(상한액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종, 형식,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며,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 ◎ (질문) ① 보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② 보험 증서에 차량가액과 비교할 때 지원 금액이 적은거 같은데 기준이 다른가요?

- (답변) ① 자동차 기준 당해연도 1분기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기준하여 기본형으로 보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은 개인용자동차보험 등 자기차량손해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보통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이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증서에 기재된 차량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질문) ①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② 받지 않고 폐차를 실시하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요?

- (답변) ① 대상자 선정 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검사를 통해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서 확인하여야 하며,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질문) 대상차량확인 보조금(14,000원)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답변) 상한액과 관계없이 수수료 14,000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이 불가하며, 비수도권 현장에서 확인하는 경우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등을 첨부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외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경우 차주에게 지원하는 비용 14,000원/대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합니다.

- ◎ (질문) 차량 고장, 사고 등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 한데 조기폐차 가능한가요?

- (답변) 조기폐차는 **정상가동이 되는 차량이 지원대상**이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좀 더 일찍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파손 등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질문) 사용본거지 기준 “여수시”로 조기폐차를 신청하여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다른시”로 이전한 경우 보조금 청구는 어디로 하나요?

- (답변) 보조금 청구 기준(추가지급 청구 포함)은 신청 후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 지자체로 보조금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 ◎ (질문) ①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② 받지 않고 폐차를 실시하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요?

- (답변) ① 대상자 선정 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검사를 통해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서 확인하여야 하며,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질문) 공동명의(A, B)로 폐차 후 단독(A)명의로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이 되나요?

- (답변) 당초 명의자 "A"가 포함된 경우로 보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은 등록된 "A" 명의자에게 지원 가능 합니다.("B"의 위임장 제출 필요)

- ◎ (질문) 공동명의일 경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최초 신청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질문) 조기폐차 후 추가 구매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신차 또는 중고차(5등급은 중고차 지원불가)를 구매하여 등록(계약서 불가)한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 또는 50%를 추가 지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 ◎ (질문) 조기폐차 신청 후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2개월 이내에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청구 기간 전에 여수시에 사전 문의하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중고차 구입은 청구 기간 연장이 불가능** 하며, 신차 출고 지연은 자동차 계약서를 지자체에 제출

- ◎ (질문)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 (답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추가 구매 청구서 포함)를 제출시점부터 약 한달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 (질문) 저감장치 장착불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저감장치 장착불가 지원은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확인합니다.

- ◎ (질문) 위·수탁 계약차량인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위·수탁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5-860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식업 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양식업의 종류	시설 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양식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11992	어류등 양식	가두리식	5	돌산 군내	2025.04.26. 2035.04.25.	-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군내어촌계	11069 재개발
11993	어류등 양식	가두리식	2.3	남면 황간	2025.04.21. 2035.04.20.	-	여수시 남면 황간리	황간어촌계	11071 재개발
11994	어류등 양식	가두리식	1.5	남면 소두라	2025.04.21. 2035.04.20.	-	여수시 남면 두라리	나발어촌계	11073 재개발
11995	어류등 양식	가두리식	3	남면 화태	2025.04.26. 2035.04.25.	-	여수시 남면 화태리	화태어촌계	11074 재개발
11996	어류등 양식	가두리식	2	화정 제도	2025.04.21. 2035.04.20.	-	여수시 화정면 제도리	제도어촌계	11077 재개발
11997	어류등 양식	가두리식	1.5	화정 자봉	2025.04.21. 2035.04.20.	-	여수시 화정면 월호리	자봉어촌계	11080 재개발
11998	어류등 양식	가두리식	2.9	화정 개도	2025.04.21. 2035.04.20.	-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신흥어촌계	11087 재개발
11999	어류등 양식	가두리식	3.6	경호 부서도	2025.04.17. 2035.04.16.	360	여수시 돌산읍 강남**	김*섭외2	11094 재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5. 03. 05.

여 수 시 장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 주식회사 만덕건설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화산1길 70, 1층 2호(화장동)
3. 법인 등록번호 : 206211-0071585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여수-25-바-0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025. 3. 5.

2025년 3월 5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25-86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우리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5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나. 사업주체 : 유한회사스튜디오아쉬크

다. 시 공 자 : (주)대중건설

라. 사업개요

1)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025번지 외 1필지(1025-18번지)

2) 증축 내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사무소) / 지상2층 1동 / 연면적 345.48㎡

3) 공사기간 : 2024. 11. 13. ~ 2025. 3. 30.

4) 순공사비 : 1,320,000,000원

5) 안전점검 비용 : 3,000,000원(VAT 별도)

바. 건축허가일 : 2024. 8. 2.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여수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4-2210호

나. 결정방법

-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1]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3. 6.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4) 서약서 1부[서식4]

6. 개찰일시 : 2025. 3. 10.(월) 이전 개별 통보(우선순위 1개 업체만 통보)

* 우선순위 업체(1,2순위)의 점수가 동일 할 경우 2개 업체 통보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개별 통보 받은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5. 3. 11.(화) 09:00 ~ 18:00까지

나. 제출서류(사실확인 서류)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2)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기존건축물 안전
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4)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별첨 1]의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색지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3. 11.(화) 09:00~ 18:00까지

나. 열람방법 : 여수시청 허가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허가과(☎061-659-41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1부. 끝.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직무분야	건축분야 [] 종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 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수수료 없음
----------------------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자기평가서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 참여 기술인	50	소 계	50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40	소 계	4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3. 점검·진단 평가결과	5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5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A- 이상	5	
		· BBB- 이상	4	
		· BB- 이상	3	
		· B- 이상	2	
		· CCC+ 이하	1	
		· 미제출	0	
총 계	100	평점 : 평가점수 × 10%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수행가격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제안가격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70	80	90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65	75	85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60	70	80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55	65	75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50	60	70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45	55	65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40	50	60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35	45	55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30	40	50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25	35	45	
	·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20	30	40	
	·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15	25	35	
	· 예정가격 13번째 이하	10	20	30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업명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을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2025년 여수시 자원순환가게 자원순환활동가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

2025년 여수시 자원순환가게 자원순환활동가 기간제근로자 모집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여 수 시 장

1 최종합격자 : 2명

[자원순환가게 자원순환활동가 - 2명]

○ 응시번호 : 1 3

2 신규채용 등록

- 등록일시 : 2025년 자원순환가게 사업 추진 전 별도 통보
- 장 소 : 시청동1길 23 (구 보건소) 3층 자원순환과
- 구비서류 : 채용건강검진대체서(원본) 1부, 신분증, 도장, 통장 사본

3 합격자 유의사항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지정된 기일에 차질 없이
등록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자원순환과(자원활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1-659-3839)